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9

발의연월일: 2020. 6. 30.

발 의 자:하태경·김승수·권은희

박형수・허은아・金炳旭

윤희숙 • 류성걸 • 강대식

김기현 · 김예지 · 김미애

임이자 · 최춘식 · 이주화

김 웅・김성원・김상훈

전봉민 · 성일종 · 황보승희

하영제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하여 지방공 기업에서 신규채용하는 인원에 비하여 정규직 전환자가 불공정한 특 혜를 받게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의 경우 직원들의 신분과 대우가 이미 국가공무원에 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인 사업을 하는 지방공기업의 특성상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정성을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겠지만 채용시험이나 공모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통로로 입사하여 아무런 노력도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현재 일자리 부족으로 대기업 못지않게 지방공기

업에 취업지원자가 몰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채용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 상의 지방공기업의 채용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9신설).

법률 제 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2절에 제63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9(직원의 채용) ① 지방직영기업관리자, 지방자치단체조합장, 지방공사사장, 지방공단이사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자등"이라 한다) 은 직원의 채용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규정하고 직원의 채용 시에는 공고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관리자등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직원의 가족과 임직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4장의 임용과 시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개 정 안 제63조의9(직원의 채용) ① 지방 직영기업관리자, 지방자치단체 조합장, 지방공사사장, 지방공 단이사장(이하 이 조에서 "관 리자등"이라 한다)은 직원의 채용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 항을 사전에 규정하고 직원의 채용 시에는 공고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공 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등이 직원을 채용하 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으로 채 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 직원의 가족과 임직원과 이해 관계가 있는 등 채용의 공정성 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